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109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보관기간 경과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1. 건 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최*숙	64.08.28.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관련 처분 결정 통보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반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3회 미제출 및 연락두절)	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	보관기관 경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11.25. ~ 2021.12.9.(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포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장인옥(Tel. 031-850-76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